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9월 10일

화산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양 *승	양 *승 1970-05-19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(안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8-27